신성장기반자금

◈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

가. 사업목적

-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*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, 스마트화, 탄소중립,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
 - *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
- 나. 지원규모 : 융자(1조 3,111억원), 이차보전(2,501억원)

3-1 혁신성장지원자금

- □ 혁신성장지원자금(일반)
 - (대상)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)
 - ※ (이차보전 대상)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 - * (업력산정)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(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)
 - (융자방식) 직접대출, 대리대출, 성장공유형 대출, 이차보전
 - ※ 성장공유형 대출의 세부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

○ (대출조건)

| 구분 | 대출 조건 |
|------|---|
| 대출한도 | (직접·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(이차보전) 융자계획 공고 Ⅱ.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(p7) |
| 대출기간 | (직접·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직접·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(이차보전) 융자계획 공고 Ⅱ.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(p7) |
| 대출금리 | (직접·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* (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(이차보전) 융자계획 공고 II.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(p7) |
| 기 타 | •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(시설자금의 50% 이내) * 단, '25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• 별표3(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, p44)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(기업 수행) |

□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자금)

- (대상) 공동생산시설,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
-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-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
※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

- 업력 제한 없음
- 별표1 '융자제외 대상업종' 中 산업단체(KSIC 94110)는 지원 대상에 포함
- 융자계획 공고 Ⅲ.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) ⑨항(소상공인) 적용 제외(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), ⑩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 적용 제외
- (**융자방식**) 직접대출, 대리대출